

# 기초연구과제 회계정산 운영기준 개선 내용

## I. 주요 상담사례 및 회계정산 운영기준

### ① [내부인건비] 연구보조(행정업무) 수행인력의 참여 가능 여부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구두상으로 안내중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행정업무 수행인력 참여 불가, 연구수행 인력만 참여 가능</li> <li>☞ 연구 행정업무는 대학 산학협력단 인력을 통해 처리(행정인력 인건비 간접비로 집행)</li> </ul>	연구수행 인력만 참여 가능

### ② [외부인건비] 타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의 참여 가능 여부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별도 기준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참여 가능, 양 기관간 협의 및 승인 필요</li> <li>- 원 소속 및 타 대학 기관장의 승인 (확인서), 근로계약서 등 제출</li> <li>- 참여율 및 인건비 지급, 보험 처리 등에 대한 중복처리 방지를 위해 양 기관간 협의 필요</li> </ul>	학생인건비 지급 불가, 양 기관 승인 필요

### ③ [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] 범용성 장비 구입 인정 여부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범용성 장비 구입 불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범용성 장비는 원칙적으로 구입이 불가하나, 과제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(전담기관 승인 전제)된 경우에 한해 구입 가능</li> </ul>	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만 구입 가능

### ④ [연구시설·장비 및 재료비] [연구활동비] 검수사진 첨부 기준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료비, 사무용품비, 도서구입비 등 집행시, 금액에 상관없이 검수사진 필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0만원 이상 집행시, 검수사진 필첨</li> <li>- 검수보고서, 거래명세서, 카드매출전표 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</li> </ul>	검수사진 첨부 대상 축소

5 [연구시설·장비 및 재료비] 토너 구입비용의 재료비, 연구활동비 혼재 사용  
 [연구활동비]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료비, 연구활동비 혼용</li> <li>※ 재료비로 편성시, 연구 종료 2개월 이내 집행 불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토너 구입비는 연구활동비로 편성·집행</li> <li>- 재료비/전산처리비는 SW·라이선스 임차 및 고장 수리 등 용도이므로, 토너 구입비는 연구활동비/수용비 및수수료로 편성하여 집행 필요</li> </ul>	토너 구입비 편성 세목 확인 철저 (일관성)

6 [연구시설·장비 및 재료비] 시험분석료의 재료비, 연구활동비 혼재 사용  
 [연구활동비]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료비, 연구활동비 혼용</li> <li>※ 재료비로 편성시, 연구 종료 2개월 이내 집행 불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험분석료는 연구활동비로 편성 권고</li> <li>- 시험·분석·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가능 시기를 고려, 연구활동비/기술정보활동비로 편성·집행 권고</li> <li>☞ 향후, 절차서 개정시 연구활동비로 정비</li> </ul>	시험분석료 연구활동비로 편성 권고 (일관성)

7 [연구활동비] 주말 사용 회의비 인정 여부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말 사용 금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말 사용 금지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 산학협력단 사전 승인 (결재)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</li> </ul>	산학협력단 사전 승인시 집행 가능

8 [연구활동비] 원거리 회의비 집행 기준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별도 기준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반경 5km초과 원거리 집행 불가하나, 부득이한 경우 산학협력단 사전 승인 (결재)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</li> </ul>	네이버 지도 직선거리 기준 적용

9 [연구활동비] 야근식대 인정 여부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야근식대 불인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수행 환경 고려, 야근식대 인정</li> <li>- 연구책임자가 확인(서명)한 야근실적서,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 필요</li> </ul>	야근식대 인정 (실적서 제출)

### 10 [연구활동비] 국내출장시 차량 렌트 비용 인정 여부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• 렌트 비용 불인정, 일비로 충당	• 특별(자치)시, 광역시 이외 지역에서의 차량 렌트 비용 인정, 렌트 차량 이용한 여행일의 일비는 2분의 1을 지급	공무원 여비(일비) 지급 기준 참조

### 11 [연구활동비] 국외출장시 공항리무진 비용 인정 여부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• 별도 기준 없음	• 공항까지의 이동 운임은 원칙적으로 일비로 충당하여야 하나, 원거리에 있어 이동 운임이 일비를 초과하는 경우 교통비로 인정, 일비는 2분의 1을 지급	공항인접 지역 일비로 충당, 원거리 지역 교통비 인정

※ 기타 FAQ 안내 사항 : 현재 운영중인 아래의 회계정산 기준에 대한 다수의 문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재안내 드리오니, 명확히 인지하시어 업무처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☑ [연구비 사용] 개인카드 사용분 인정 여부

☞ 연구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해야 함. 연구비카드 발급 전에 한하여 법인/개인카드 사용 일시적 허용 (단, 부가가치세는 집행금액 불포함)

#### ☑ [연구활동비] 국외출장시 개인일정이 포함될 경우 인정 여부

☞ 개인 일정이 포함된 국외출장의 경우 전액 불인정

## II. 시 행 일 : '21. 5. 10(월)

## III. 향후 계획

연구비 사용 및 정산기준, Q&A 사례집, 체크리스트 등 제작·배부 예정